

[직무발명보상] 회사의 대표이사, 감사, 등기이사 등 임원의 직무발명 관련 기본사항



법인의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.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때 법인의 임원은, 대표이사, 등기이사, 비등기 이사, 임시이사 등은 물론이고 감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. 즉, 법인을 사용자로 볼 때 이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구성원으로 볼 수 있으면 직무발명의 주체인 종업원으로 보는 것입니다.

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인 법인의 경우에도, 그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는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니다.

일본 판례에서 대표이사를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 일본 법원은 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기술부문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회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행위는 그 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”고 하여, 대표이사도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갖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(오사카지방법원 1972. 3. 31. 판결 - 연질 합성수지 합착 내압호스의 제조법 사건, 동경지방법원 1985. 2. 22. 판결 - 경주마용 발마기 사건, 동경고등법원 1985. 9. 25. 판결 - 경주마용 발마기 항소심 판결, 고베지방법원 1989. 12. 12. 결정 - 유압식 게이트 사건 등).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도 직무발명자로서 직무발명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이공계 변호사/변리사, 발명자 중심 보상청구소송, 다년간 다수 사건 업무경험, 비밀보호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